2025년도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공고

「2025년도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」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02. 17.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1 사업 목적

○ 신기술 인검증 **신청 준비단계에서 행정적·기술적 컨설팅**을 제공 하여 신청서 **작성 애로사항 경감** 및 **신청서 품질 향상** 지원

2 공고 개요

- **(사업명)** 2025년도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
- (궁고기간) '25.2.17. ~ '25.8.31.
- (지원대상) 신기술 인검증 신규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준비 기업
- (지원자격)
- 지식재산권 및 시험성적서을 보유하고, 신기술 신청서(초안) 제출이 가능하며,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을 보유한 기업(모형시설 이상 규모)
- ※ 신청인은 기술보유자(특허 최종권리권자)와 동일하여야 하며, 기술보유자가 공동 으로 설정된 경우, 실증현장 보유자 중심으로 신청·작성
- 유효기간 연장신청 준비 기업은 접수일 기준, 유효기간이 170일 이상 남아있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 가능

- **(지원규모)** 15건(신기술 준비 기업 10건, 연장신청 준비기업 5건)
- (지원내용)
- (기술원) 신기술 신청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(구비서류 포함) 및 요건 안내
- (코디네이터) 신청서 주요항목(신규진보성, 효율성, 경제성, 기술개선 사항 등)에 대한 내용 검토, 작성요령 및 기술적 자문 수행
- (기타) 신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

〈환경신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〉 (「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7조 제2항)

- 1)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
- 2)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
- 3) 과학적,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
- 4)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·정성적으로 계량· 평가 할 수 없는 기술
- 5)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등

3 신청방법

- (제출서류)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신청서, 환경신기술 신청서 초안
- (제출방법) 전자우편(gechoi@keiti.re.kr)
- (접수기간) '25.03.04. ~ '25.08.31. ※ 지원규모 초과 접수 시,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**(문의)** 02-2284-1631
- 붙임 1.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.
 - 2. 환경신기술 신청서(연장 포함) 작성 매뉴얼. 끝.